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11 발의연월일: 2025. 2. 12.

발 의 자: 송재봉ㆍ이수진ㆍ이연희

이병진 · 허성무 · 김우영

강준현 · 김정호 · 임미애

김성환 · 김남희 · 오세희

민병덕 • 박홍배 의원

(14인)

제안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의 사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에서 분리해서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활용할 수 있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로 취급하는 관점이 주를 이루고 있어, 사용후 배터리를 이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활용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또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등 다수의 법률의 규제를 적용받아, 사용후 배터리 사업을 산업화하고 활성화하기에 어려운 상황임.

이에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자원 순환을 통해 탄소중립과 순환경제에 기여하며, 배터리 공 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 여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공급망 안정화 및 그 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한 취급과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취득사업자, 판매사업자, 활용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8조까지).
-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용후 배터리의 거래·취득·처분 등을 지원하는 사용후 배터리 공공 거래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11조).
-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용후 배터리에 관한 운송 및 보관 사업을 공급망안정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바. 안전한 배터리 사용을 위하여 사용후 배터리의 활용전검사, 재제조·재사용제품의 안전검사, 사후검사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제도를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전주기(全週期) 이력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배터리 통합이력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23조).
- 아. 사용후 배터리 관련 사업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은 사용후배터리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 정하도록 함(안 제26조).
- 자. 사용후 배터리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사용후 배터리 거래에 관한 분쟁의 조정 및 사용후 배터리 관리사업자 등록 요건 심의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사용후배터리심의위원회를 두도록함(안 제30조).
- 차.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제조하는 자 또는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수입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한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야 하도록 함(안제32조).
- 카. 국가는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한 보관·운송, 효율적인 활용, 배터리 핵심 광물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한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관련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법률 제 호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그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전기자동차 배터리"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의 구동을 목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저장매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사용후 배터리"란 전기자동차로부터 분리되어 재제조, 재사용 또는 재활용의 대상이 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말한다.
- 3. "배터리 재제조"란 사용후 배터리를 부속품 교체 및 수리 등을 통해 복원하여 안전·성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로 재조립하는 것을 말한다.

- 4. "배터리 재사용"이란 사용후 배터리를 부속품 교체 및 수리 등을 통해 복원하여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아닌 에너지저장장치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용도로 재조립하는 것을 말한다.
- 5. "배터리 재활용"이란 사용후 배터리를 분해한 후 리튬, 코발트 또는 니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생원료를 추출·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 6. "취득사업자"란 전기자동차로부터 사용후 배터리를 분리한 후 사용후 배터리의 원소유자로부터 그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점유하는 자를 말한다.
- 7. "활용사업자"란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는 자를 말한다.
- 8. "판매사업자"란 활용사업자 또는 다른 판매사업자에게 사용후 배터리를 판매 또는 판매를 중개, 알선하는 자를 말한다.
- 9. "활용전검사"란 재제조 또는 재사용 목적으로의 이용 가능 여부 를 시험하는 검사를 말한다.
- 10. "제품 안전검사"란 재제조 또는 재사용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사를 말한다.
- 11. "사후검사"란 판매·유통된 재제조 또는 재사용 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유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공급망 안정화 및 그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사용후 배터리 활용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 2.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
- 3. 사용후 배터리 공공거래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4. 전기자동차 배터리 통합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5. 그 밖에 사용후 배터리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표준 마련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 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사업자는 사용후 배터리가 우선적으로 재제조 또는 재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재제조 또는 재사용이 어려운 사용후 배터리도 가급적 재활용하여 폐기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급 망 안정화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공급망 안정화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사용후 배터리의 거래 등

- 제5조(사용후 배터리의 거래 등) ① 사용후 배터리의 취급과 거래는 개인 또는 법인 간의 자유로운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한 취급과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6조에 따

라 그 거래에 필요한 사용후 배터리 관리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1. 취득사업자
- 2. 판매사업자
- 3. 활용사업자
- ③ 사용후 배터리를 취급 또는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목적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자격 중 하나 이상의 등록을 할 수 있다.
- 제6조(취득사업자) ① 취득사업자는 제26조에 따라 취득사업자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취득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취득사업자는 사용후 배터리를 안전하게 분리 및 보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취득사업자가 취득한 사용후 배터리를 제3자에게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판매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판매사업자를 통하여 판매하여야한다.
 - ④ 취득사업자가 활용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목적으로 직접 이용할 수 있다.
- 제7조(판매사업자) ① 사용후 배터리를 직접 판매하거나 사용후 배터리의 판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고자 하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판매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판매사업자는 사용후 배터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거래가 완료될 때까지 사용후 배터리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 ③ 판매사업자는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사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 ④ 판매사업자는 사업상 필요한 경우 다른 판매사업자에게 사용후 배터리를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판매사업자에게 사용후 배터 리 판매를 사업의 주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활용사업자) ①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 재사용 또는 재활용 중 어느 하나의 용도로 이용하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활용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활용사업자는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 재사용 또는 재활용 목적에 맞게 활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인력 등의 기술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 ③ 활용사업자는 재제조 및 재사용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 안전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 촉진) ① 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갖춘 사용후 배터리의 경우 재제조 또는 재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활용사업자에게 우선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

른 활용사업자가 생산한 재제조 및 재사용 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구매 계획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제10조(사용후 배터리 거래 시 준수사항) ① 사용후 배터리를 거래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허위 매물 고지
 - 2. 인위적인 거래 시세 조작
 - 3. 거래 상대방에 대한 부당한 차별 또는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용후 배터리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장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제11조(사용후 배터리 공공 거래시스템의 설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은 사용후 배터리의 원활한 거래 및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거래·취득·처분 등을 지원하는 사용후 배터리 공공 거래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공공 거래시스템 운영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1. 사용후 배터리의 소규모 또는 일회성 거래
- 2. 연구개발 등 비영리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후 배터리의 취득
- 3.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운행하였던 전기자동차에서 탈거한 사용후 배터리의 처분
- 4. 침수, 파손 또는 화재 등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어려운 사용후 배터리의 처분
- 5. 그 밖에 사용후 배터리 거래의 공정성,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 거래시스템 운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공공 거래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공공 거래시스템 운영자의 자격요건) ① 공공 거래시스템 운영자는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 ② 공공 거래시스템 운영자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 관리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공공 거래시스템 운영자의 책무) ① 사용후 배터리 거래의 공 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거래는 공개경쟁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공공 거래시스템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 방식 운영을 포함한 공공 거래시스템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공공 거래시스템 운영자는 사용후 배터리 거래 내역 등을 포함한 공공 거래시스템의 운영결과를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공공 거래시스템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소규모 구매 등에 대한 공공 거래시스템 특례) ① 공공 거래시스템을 통해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거래·취득을 위하여 사용후 배터리를 구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6조에도 불구하고 활용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구매할 수 있다.
 - 1. 공공 거래시스템 운영자에게 사용후 배터리의 구매목적과 활용계 획 등을 사전 신고할 것
 - 2. 사전 신고한 구매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후 배터리를 실제 활용할 것
 - 3. 재제조 또는 재사용 목적으로 사용후 배터리를 구매한 경우 제17

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안전검사에 관한 규정을 따를 것

- 4. 거래 이후 구매한 사용후 배터리의 활용 결과를 공공 거래시스템을 통해 등록할 것
- ② 공공 거래시스템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를 구매한 자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공정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공공 거래시스템을 통한 거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③ 공공 거래시스템 운영자는 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제 23조에 따른 배터리 통합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① 제1항에 따른 배터리 구매와 제2항에 따른 거래 참여 제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거래정보의 공개) 공공 거래시스템 운영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용후 배터리 시장환경 조성과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거 래된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 및 평균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거래정보를 분기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 제16조(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운송·보관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은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 및 사용후 배터리의 원활한 시장거래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용후 배터리에 관한 운송 및 보관 사업을 공급망안정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사업을 추진하려는 자는 공급망 안정과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운송 및 보관 실행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국내 보관 시설 및 운송 인프라 구축
- 2. 안정적인 사용후 배터리의 운송 및 보관을 위한 인증·실증
- 3. 공급망안정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개선
- 4. 그 밖에 제30조에 따른 사용후배터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④ 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사업 지정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관리

- 제17조(사용후 배터리의 활용전검사) ① 판매사업자 또는 활용사업자는 사용후 배터리가 재제조 또는 재사용 목적으로 이용되기 이전에 활용전검사를 받아야한다.
 - ② 활용전검사의 절차 및 방법, 안전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고시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한 활용을 위하여

활용전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활용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활용전검사기관의 지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고시한다.

- ④ 활용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활용전검사의 결과를 제23조에 따른 통합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18조(재제조 또는 재사용 제품의 안전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재제조 또는 재사용 제품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누구든지 제품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안전검사 대상 품목을 판매·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대상 품목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의 안전검사와 관련한 절차 및 방법, 안전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제품 안전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제품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품 안전검사기관의 지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⑤ 활용사업자는 재제조 또는 재사용 제품 중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검사 대상 품목을 판매·유통하기 전에 해당 제품의 안전검사

결과를 제23조에 따른 통합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19조(사용후 배터리의 사후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판매·유통된 재제조 또는 재사용 제품의 안전 및품질유지 등을 위하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자에게 제18조제4항에 따른 제품 안전검사기관을 통하여 사후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검사의 대상 품목, 검사방법, 주기 등 구체적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사후검사를 한 제품 안전검사기관은 그 결과를 제 23조에 따른 통합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20조(체계적인 사용후 배터리 안전검사 운영) ① 제30조에 따른 사용후배터리심의위원회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검사 간 통일성과 연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기준 등에 대한 의견을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후배터리심의원회의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하여야 한다.
- 제21조(신뢰성 보증사업의 실시) ① 활용사업자는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 재사용 제품을 구매한 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운영하는 공제사업 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한다.
 - 1.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 2. 「보험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 또는 보험 사업의 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표준화사업) ① 국가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경제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사용후 배터리의 분리, 보관, 운송 및 평가 등 단계별 표준 개발을 위한 연구 및 보급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재제조 또는 재사용 배터리의 품질 향상과 호환성 확보를 위한 제품 표준 개발을 위한 연구 및 보급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국내에서 개발되거나 개발 중에 있는 사용후 배터리 또는 관련 기술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으로 공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국가는 사용후 배터리 또는 관련 기술이 「국가표준기본법」 제 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가표준과 국제표준에 적합한지를 평가 하는 관련 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배터리 통합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제23조(배터리 통합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전주기(全週期) 이력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전기자동차 배터리 통합이력관리시스템(이하 "통합이력관리 시스템"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다.
 - 1.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제조자 및 제조일자·지역, 원료 구성 및 형태 등 일반 정보
 - 2.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충전상태 기록내역, 사고·수리 및 교환 이력 등 사용이력 정보
 - 3. 사용후 배터리를 전기자동차에서 분리한 사용후 배터리 유형과 외관상태 등 취득 정보
 - 4. 사용후 배터리 거래의 참여자, 거래일, 거래 단가 및 물량, 거래 대상의 잔존가치 평가 결과 등 거래 정보
 - 5.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재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검사 결과, 일반정보 및 기본 성능 정보 등 재제조·재사용 정보
 - 6. 사용후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경우 해당 사용후 배터리의 재활용 일자, 재활용 원료 명칭·무게, 폐기물 처리 결과 등 재활용 정보
 - 7. 그 밖에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통합이력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정보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통합이력관리시스템에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등재하여야 한다.
- 1.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
- 2.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제조, 판매, 판매 중개 또는 대여하는 자
- 3.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사용후 배터리 관리사업자
- 4.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전기자동차 를 신규등록 ·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한 자
- 5. 「자동차관리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5조의2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 6. 사용후 배터리를 전기차에서 분리한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 7.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자로서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정보의 등록 범위, 등록 절차 및 방법 등 세부 내용을 정한 후 이를 고시한다.
- 제24조(배터리 통합이력관리시스템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은 통합이력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관리할 기관(이하 "통합이력관리시스템 전

담기관"이라 한다)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통합이력관리시스템 전담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통합이력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정보의 보호 및 관리
- 2. 제23조제2항에 따른 등록 주체에 대하여 미등록 및 오류 정보 등 의 시정 요청
- 3. 제25조에 따른 정보공개의 청구 접수 및 통지 등 행정 지원
- 4. 통합이력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정보를 활용한 국내 배터리 공급망 분석 및 정책 제안
- 5. 통합이력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산정보 저장·처리 장치의 유지 및 보수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이력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업무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통합이력관리시스템 전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합이력관리시스템 전담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5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
- 3. 그 밖에 통합이력관리시스템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 ⑤ 그 밖에 통합이력관리시스템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 지정취소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배터리 통합이력관리시스템 정보공개의 청구 및 공개) ① 통합이력관리시스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통합이력관리시스템 전담기관에 청구인의 성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담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 공개를 청구할수 있다.
 - ② 통합이력관리시스템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가접수되는 경우 제30조에 따른 사용후배터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2.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 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4. 그 밖에 공개될 경우 법인등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하는 정보

- ③ 제30조에 따른 사용후배터리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심의하는 경우 관련 법인등 정보 주체의 의견을 들을 수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장 사용후 배터리 관리사업자 등록 등

- 제26조(사용후 배터리 관리사업자 등록 등) ① 사용후 배터리 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사용후배터리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등록한 사용후 배터리 관리사업자가 제1 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④ 사용후 배터리 관리사업자의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기준, 안전 기준, 인력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6조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 관리사업을 등록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 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 람
 -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5.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제28조(지위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후 배터리 관리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사용후 배터리 관리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讓受人)
 - 2. 법인인 사용후 배터리 관리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

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 관리사업자의 사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사용후 배터 리 관리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절차
- ③ 사용후 배터리 관리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사용후 배터리 관리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후 배터리 관리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사용후 배터리 관리

사업자의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양도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사용후 배터리 관리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⑥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용후 배터리 관리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사용후 배터리 관리사업자의 등록을 상속인에 대한 등록으로 본다.
- 제29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용후 배터리 관리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 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 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2. 사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 3. 제26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사용후배터리심의위원회

- 제30조(사용후배터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사용후 배터리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사용후 배터리 거래에 관한 분쟁의 조정 및 사용후 배터리 관리사업자 등록 요건 심의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사용후배터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산업 및 공정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31조(위원회의 업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제·개 정에 관한 사항
 - 2. 제16조에 따른 공급망안정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3.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 기준 등에 대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4. 제25조제2항에 따른 배터리 통합이력관리시스템 정보공개 심의에 관한 사항
- 5. 제26조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 관리사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 6. 제29조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 관리사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에 관한 사항
- 7. 제39조에 따른 공급망안정사업에 관한 규제개선 사항
- 8. 그 밖에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사용후 배터리의 거래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후 배터리의 거래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정신청에 대하여 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때 조정서의 정본(正本)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취하 (取下)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그 조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

립된 것으로 본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 조정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8장 재생원료 사용 목표제

- 제32조(재생원료 사용 목표비율 등) ①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제조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수입하는 자(전기자동차를 수입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한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수입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 물자원의 수급현황, 재생원료 활용기술, 사용후 배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생원료 의무사용과 관련 한 단체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생원료 사용 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

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재생원료 사용 목표비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의견청취, 목표 달성 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33조(재제조 및 재사용 배터리에 대한 재생원료 사용 목표비율 간주 인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 또는 재사용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의 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9장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제34조(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후 배터리의 재제조, 재사용 및 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활용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35조(배터리 기술인력의 수급동향조사) ① 국가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포함한 배터리 산업 전반에 대한 기술인력 수급동향 조사를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1. 배터리 관련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 2. 배터리 관련 교육 연구기관
- 3. 공공기관
- 4. 그 밖에 기술인력의 수급동향 조사에 필요한 관계 기관
-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국가는 기술인력의 수급동향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대학 등 교육기관은 이를 활용하여 학생 정원 운영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36조(기술개발 지원) ① 국가는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한 보관·운 송, 효율적인 활용, 배터리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한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 연구개발사업
 - 2.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 · 분석
 - 3.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간의 공동연구개발사업
 - 4. 그 밖에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및 배터리 핵심광물 등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국가는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사용후 배터리 관리사업자 및 제16조에 따른 공급망안정사업의 추진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사업자간 기술 공유와 공동 활용을 장려하며, 기술의 상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 공급, 세제·금융 지원, 우선구매, 신기술·신제품 인증 등 다양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국가기술개 발사업 및 민간기술개발의 성과에 대하여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 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37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사용후 배터리 및 배터리 핵심광물 등 분야의 지식재산 등 기술의 이전·공유·활용 및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4.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하여 배터리 분야 연구성과물을 보유한 대학 등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터리 연구·기술개발 관련 기관
 - ② 국가는 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시제품의 제작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출연 또는 투자·융자 등의 금융지원
 - 2.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해당 업무의 위탁 및 그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3. 그 밖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38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제16조에 따른 공급망안정사업을 추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이 조에서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기업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해당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
- ⑥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 여부를 검토하고, 조속히 관련 법령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⑦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등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규제특례법」 제86조의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특례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같은 법 제72조 및 제8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심사기 준,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9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8조에 따른 규제개선을 부여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을 관리·감독한다.
 - ② 제38조에 따라 규제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다.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용받은 경우
 - 2. 제38조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3. 규제개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적용 취소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장 보칙

- 제40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제4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1장 벌칙

-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적합판정을 받은 안전검사 대상품목을 판매 또는 유통한 자
 -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제조합 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활용사업자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 등록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